

大田直轄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條例制定案

議案 番號	108
----------	-----

提出年月日：1992. 3. 30

提出者：大田直轄市長

1. 提案理由

大田直轄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法的根據를 마련하여 文化藝術分野 專門機構의 構成으로 원활한 業務遂行 및 민·관 협조를 도모 하고 元老 文化藝術人의 직·간접적 行政 參與機會 擴大코자 함.

2. 主要骨子

가. 委員會 構成(안 제2조)

- 인 원 : 13인 이내(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 당연직 : 시장, 부시장, 내무국장, 시교육청 부교육감

나. 機 能(안 제3조)

-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심의
- 지방전통문화예술의 전승·개발에 관한 사항
- 기타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다. 委員의 任期(안 제4조)

- 위촉직 : 4년(최초에 위촉되는 위원중 3인은 2년)

라. 會 議(안 제6조)

- 정기회의 : 년1회
- 임시회 : 수시

3. 參考事項(關聯根據)

가. 文예진흥법 : “별 첨”

나. 文化예술진흥위원회규정 : “별 첨”

대전직할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제3항 및 문화예술진흥위원회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위원은 대전직할시 내무국장, 대전직할시교육청 부교육감과 문화예술에 이해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지방전통문화예술의 전승, 발전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방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최초에 위촉되는 위원중 3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개최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전문위원) ①위원회에는 전문위원 약간인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의 품위손상 등 위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위원이 인사이동 등 기타 사유로 활동이 불가능할 때

제9조(간사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계장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보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대전직할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文化藝術振興法

第 1 條(目的) 이 法은 文化藝術의 振興을 위한 事業과 活動을 支援함으로써 우리나라의 傳統的인 文化藝術을 계승하고 새로운 文化를 創造하여 民族文化의 中興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5 條(文化藝術振興委員會) ①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重要施策을 審議하게 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文化藝術振興委員會를 둔다.

②地方文化藝術의 振興에 관한 重要施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道知事 所屬下에 地方文化藝術振興委員會를 둔다.

③文化藝術振興委員會 및 地方文化藝術振興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문화예술진흥위원회규정

제12조(지방위원회의 구성) ①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기획관리실장(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내무국장), 시·도 교육위원회의 학무국장 및 시·도의 지방문화재위원회 위원장과 문화예술에 이해가 깊은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14조(준용) 제4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지방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방위원회”로, “국무총리”는 “시·도지사”로, “문화부”는 “시·도”로 본다.

大田直轄市文化藝術振興委員會條例制定案

審 查 報 告 書

1992年 4月 10日

內 務 委 員 會

I. 審 查 經 過

가. 提出日字 및 提案者 : 1992年 3月 30日 大田直轄市長

나. 回 附 日 字 : 1992年 4月 1日

다. 上 程 日 字 : 第10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第1次 內務委員會(1992. 4. 8)
上程, 審議, 議決

II. 提案說明 要旨 (提案說明者 : 內務局長)

1. 提案理由

大田直轄市 文化藝術振興委員會의 組織과 運營에 관한 法的 根據를 마련하여 文化藝術分野 專門機構의 構成으로 圓滑한 業務遂行 및 민·관 협조를 圖謀하고 元老 文化藝術人의 직·간접적 行政 參與機會를 擴大코자 함.

2. 主要骨子

가. 委員會 構成(案 第2條)

- 人 員 : 13人 以內(委員長, 副委員長, 委員)
- 當然職 : 市長, 副市長, 內務局長, 市教育廳 副教育監

나. 機 能(案 第3條)

- 地方文化藝術振興에 관한 基本施策 및 計劃 審議
- 地方傳統文化藝術의 傳承·開發에 관한 事項
- 其他 地方文化藝術振興을 위한 基盤造成에 관한 事項

다. 委員의 任期(案 第4條)

- 委囑職 : 4年(最初에 委囑되는 委員中 3人은 2年)

라. 會 議(案 第6條)

- 定期會議 : 年1回
- 臨時會 : 隨時

Ⅲ. 專門委員 檢討要旨 (專門委員 : 安鍾贊)

本 條例 制定案은 文化藝術振興法 第5條 第2項 및 文化藝術振興委員會 規程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文化藝術에 專門性を 기하

고 關聯 文化藝術人들의 參與 機會를 擴大하는 內容으로 文化藝術 分野의 著名人士로 文化藝術振興委員會를 構成 運營하여 이를 繼承 發展토록 하고자 하는 事案임.

本 案件의 主要內容으로는

첫째, 委員會 構成으로 委員長 1人和 副委員長 1人을 포함한 13人 以內的 委員으로 構成하고 委員長에 市長, 副委員長에

副市長, 그리고 委員은 大田直轄市 內務局長과 大田直轄市 教育廳 副教育監으로 하여 當然職으로 하였음.

委囑職 9名으로는 文化藝術에 이해가 있는 元老人士로 市長이 委囑하는 者로 하였음.(案 第 2條)

둘째, 委員會의 機能으로는

地方 文化 藝術 振興에 관한 基本 施策 및 計劃 樹立과 地方 傳統 文化 藝術의 傳承 開發 等 地方 文化 藝術 振興을 위한 基盤 造成에 관한 事項을 審議하며,

셋째, 委員의 任期는 4年으로 하되 最初 委囑되는 委員 3人의 任期는 2年으로 하여 持續性を 維持토록 하였음.(案 第 4條)

本 條例案은 傳統的인 文化藝術의 傳承 發展을 위한 重要施策을 審議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83. 12. 28 改正된 文化藝術振興法에 本 委員會를 設置토록 規定되어 있고, 文化藝術振興委員會 規程(大統領令)에 依據 組織, 運營토록 되어 있는 바,

現在까지는 大統領令의 規定에 따라 運營되어 왔으나,
그 동안 文化藝術振興基金造成 運營條例에 의하여 造成된 文化
藝術振興基金의 運營等を 위하여는 本案의 委員會 設置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思料됨.

「檢 討 資 料」

條例案과 文化藝術振興委員會 規程과의 比較

委員會 組織

區 分		條 例 案	規 程 (大統領令)
委 員 長		市 長	市 長
副 委 員 長		副 市 長	委員會에서 選出
委 員	當 然 職	· 市 - 內務局長 · 市教育廳 - 副教育監	· 市 - 企劃管理室長 · 市教育廳 - 學務局長 · 其他 - 地方文化財 委員長(副市長)
	委 囑 職	· 文化藝術에 理解가 깊은자중 市長이 委囑하는 者	· 좌 동

IV. 質疑 및 答辯 要旨 : 省 略

V. 討論要旨 : 省 略

VI. 審查結果 : 原案 可決

VII. 體系 字句 整理 內容 : 없 음

VIII.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